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불법 총기·부품 반입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마약 밀반입 차단 및 외화 밀반출 단속 등을 위하여 4개 과를 신설하며 인력 450명(5급 4명, 6급 60명, 7급 90명, 8급 77명, 9급 32명, 전문경력관 나군 15명, 전문경력관 다군 17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6. ~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7명 및”을 “9명 및”으로, “7명을”을 “8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전세관·여수세관 및 군산세관”을 “대전세관 및 여수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본문 중 “제10항 및 제11항”을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특송통관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제12조제9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4조제7항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여수세관·군산세관”을 “여수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4 중 총계 “369”를 “371”로 하고, 일반직 계 “368”을 “37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48”을 “49”로, 관세주사 “83”을 “8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77”을 “379”로 하고, 일반직 계 “376”을 “378”로 하며, 행정사무관 “48”을 “49”로, 관세주사 “96”을 “97”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929”를 “5,379”로 하고, 일반직 계 “4,929”를 “5,379”로 하며, 행정사무관 “127”을 “131”로, 관세주사 “788”을 “848”로, 관세주사보 “952”를 “1,042”로, 관세서기 “1,066”을 “1,143”으로, 관세서기보 “744”를 “776”으로,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2”를 “24”로,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75”를 “188”로,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3”을 “26”으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91”을 “360”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934”를 “5,384”로 하고, 일반직 계 “4,934”를 “5,384”로 하며, 행정사무관 “142”를 “146”으로, 관세주사 “865”를 “925”로, 관세주사보 “1,012”를 “1,102”로, 관세서기 “968”을 “1,045”로, 관세서기보 “691”을 “723”으로,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22”를 “24”로,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75”를 “188”로,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23”을 “26”으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관독 담당) “191”을 “36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에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23명 (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7)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38명 (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8)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35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 제2호나목에 5)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40명 (5급 1명, 6급 8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나군 6명, 전문경력관 다군 89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 (세관관서)	30명 (6급 3명, 7급 5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3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7) 여행자휴대품 현장검사(세관	129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서)	(6급 23명, 7급 31명, 8급 29명, 9급 13명, 전문경력관 다군 33명)	
8) 수입화물 현장검사(세관관서)	36명 (6급 5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8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관) ① · ② (생 략)	제11조(세관)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인천공항세관에 세관운영과 · 감사담당관 및 협업검사센터 를 두고, 통관감시국에 수출입 물류과 · 통관정보과 · 물류감시 1과 · 물류감시2과 · 수입통관1 과 · 수입통관2과 · 수출통관과 · 장비관리과 · 전산정보관리과 · 심사정보과 및 분석실을, 여 행자통관1국에 여행자통관1과, 여행자통관검사관 <u>7명</u> 및 여 행자정보분석과를, 여행자통관2국 에 여행자통관2과 및 여행자통 관검사관 <u>7명</u> 을, 특송우편통관 국에 특송우편총괄과 · 특송통 관1과 · 특송통관2과 · 특송통관 3과 ·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 과를,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 사관 2명, 마약조사1과, 마약조 사2과 및 마약조사3과를 둔다.	③ ----- ----- ----- ----- ----- ----- ----- ----- ----- <u>9명</u> 및 ----- ----- ----- <u>8명</u> 을 ----- ----- ----- ----- ----- -----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수원세관 · 안산세관 · 안양 세관 · 천안세관 · 용당세관 · 양	⑪ 수원세관 · 안산세관 · 안양 세관 · 천안세관 · 용당세관 · 양

산세관 · 창원세관 · 마산세관 ·
경남남부세관 · 구미세관 · 포항
세관 · 속초세관 · 광양세관 · 목
포세관 · 대전세관 · 여수세관
및 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신 설>

⑫ · ⑬ (생략)

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 다만, 용당세관 · 대전세
관의 통관지원과장은 공업사무
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
장) ① ~ ⑧ (생략)

⑨ 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신 설>

산세관 · 창원세관 · 마산세관 ·
경남남부세관 · 구미세관 · 포항
세관 · 속초세관 · 광양세관 · 목
포세관 · 대전세관 및 여수세관

-----.

⑫ 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 · 특
송통관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
다.

⑬ · 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
과 같음)

⑮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 -----

-----.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
장)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1. 2. (현행과 같음)

3. 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
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생략)

⑩ ~ ③⑩ (생략)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⑥ (생략)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 ②③ (생략)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생략)

<신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⑩ ~ ③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12조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 - -----.

⑧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9</u>	<u>371</u>	+2
•	•	•	
•	•	•	
일반직 계	<u>368</u>	<u>370</u>	+2
•	•	•	
•	•	•	
행정사무관	<u>48</u>	<u>49</u>	+1
•	•	•	
•	•	•	
관세주사	<u>83</u>	<u>84</u>	+1
•	•	•	
•	•	•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77</u>	<u>379</u>	+2
•	•	•	
•	•	•	
일반직 계	<u>376</u>	<u>378</u>	+2
•	•	•	
•	•	•	
행정사무관	<u>48</u>	<u>49</u>	+1
•	•	•	
•	•	•	
관세주사	<u>96</u>	<u>97</u>	+1
•	•	•	
•	•	•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29</u>	<u>5,379</u>	+450
일반직 계	<u>4,929</u>	<u>5,379</u>	+450
·	·	·	
·	·	·	
행정사무관	<u>127</u>	<u>131</u>	+4
·	·	·	
·	·	·	
관세주사	<u>788</u>	<u>848</u>	+60
·	·	·	
·	·	·	
관세주사보	<u>952</u>	<u>1,042</u>	+90
·	·	·	
·	·	·	
관세서기	<u>1,066</u>	<u>1,143</u>	+77
·	·	·	
·	·	·	
관세서기보	<u>744</u>	<u>776</u>	+3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u>22</u>	<u>24</u>	+2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 색 및 판독 담당)	<u>175</u>	<u>188</u>	+13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u>23</u>	<u>26</u>	+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 색 및 판독 담당)	<u>191</u>	<u>360</u>	+169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34</u>	<u>5,384</u>	+450
일반직 계	<u>4,934</u>	<u>5,384</u>	+450
·	·	·	
·	·	·	
행정사무관	<u>142</u>	<u>146</u>	+4
·	·	·	
·	·	·	
관세주사	<u>865</u>	<u>925</u>	+60
·	·	·	
·	·	·	
관세주사보	<u>1,012</u>	<u>1,102</u>	+90
·	·	·	
·	·	·	
관세서기	<u>968</u>	<u>1,045</u>	+77
·	·	·	
·	·	·	
관세서기보	<u>691</u>	<u>723</u>	+32
·	·	·	
·	·	·	

전문경력관 나군(탐지조사 담당)	<u>22</u>	<u>24</u>	+2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 색 및 판독 담당)	<u>175</u>	<u>188</u>	+13
전문경력관 다군(탐지조사 담당)	<u>23</u>	<u>26</u>	+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 색 및 판독 담당)	<u>191</u>	<u>360</u>	+169